

대구지방법원 2023. 6. 22 선고 2020가합20975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반석

담당변호사 박예신, 임재화

피고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

변론 종결2023. 5. 18.

판결 선고2023. 6. 22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20.

7. 24. 체결된 매매계약을 553,616,438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 A에게

108,000,000원, 원고 B에게 445,325,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

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 B은 D에게 2016. 7. 14. 200,000,000원, 2017. 4. 1. 50,000,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,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 B과 D는 2017. 4. 1. 대여금 합계 250,000,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7. 4. 20., 이자 연 36%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.

나. 원고 A은 D에게 2017. 2. 23. 45,000,000원, 2017. 2. 24. 45,000,000원을 각 대여하였다. 다. E은 2016. 12. 24. D에게 20,000,000원을 대여하였고, 원고 A은 2017. 6. 19. E에게 위 D의 2016. 12. 24.자 대여금 20,000,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라. D는 2017. 2. 25. 위 나.항 기재 대여금 중 2,000,000원을 원고 A에게 변제하였다.

마. 원고 A은 이 법원에 D를 상대로 D에게 대여한 위 나.항 기재 90,000,000원 및 다.항 기재 D의 E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금 20,000,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, 이 법원은 2022. 7. 8.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'D는 원고 A에게 변제한 2,000,000원을 제외한 108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원고 A과 D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2022. 8. 13. 그대로 확정되었다(2019가단139368).

바. 원고 B은 이 법원에 D를 상대로 D에게 대여한 2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, 이 법원은 2019. 10. 31.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원고 B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원고 B과 D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2019. 11. 16. 그대로 확정되었다(2019가합1200).

사. 피고는 2020. 7. 24.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3,100,000,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고 한다), 2020. 8. 12.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아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,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6, 7, 9, 11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을 제5,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

1)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) 원고 A에 관한 판단

① 원고 A은 D에게 2017. 2. 23. 45,000,000원, 2017. 2. 24. 45,000,000원을 대여한 사실, ② E은 2016. 12. 24. D에게 20,000,000원을 대여하였고, 원고 A은 2017. 6. 19. E에게 20,000,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, ③ D는 2017. 2. 25. 위 ①항 기재 대여금 중 2,000,000원을 원고 A에게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따라서 원고 A은 D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및 구상금 합계 108,000,000원의 채권이 있으며,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,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.

이에 대하여, 피고는 원고 A의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,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므로(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6다1045 판결 등 참조),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.

나) 원고 B에 관한 판단

원고 B은 D에게 2016. 7. 14. 200,000,000원, 2017. 4. 1. 50,000,000원을 대여한 사실, 원고 B과 D는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7. 4. 1. 위 대여금 합계 250,000,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7. 4. 20., 이자 연 36%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따라서 원고 B은 D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445,616,438원의 채권[원금 250,000,000원 + 지연손해금 중 원고 B이 구하는 195,616,438원(=250,000,000원 × 1190/365(= 2017. 4. 21.부터 2020. 7. 24.까지1)) × 원고 B이 구하는 이자율 연 24%2) , 원

미만 버림)이 있으며, 위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,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.

2) 사해행위 가) 관련 법리

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,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(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),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(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).

나) 구체적 판단

(1) 적극재산

앞서 든 증거들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이 법원의 G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는 아래와 같이 다수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고, 그 평가액은 합계 4,421,359,9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.

1	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
2	대구 동구 H 임야 31m ²
3	대구 동구 I 임야 290m ²
4	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
5	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
6	대구 동구 J 답 929m ²
7	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
이상 토지	
8	대구 동구 K 조적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주택 201.1m ²
9	대구 동구 K 기존벽체이용 판넬 및 샤시조 샤시 및 판넬지붕 등 단층 창고 18.3m ²
10	대구 동구 K 샤시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3m ²
11	대구 동구 K 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창고 150m ²
12	대구 동구 L 조적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스테이지붕 2층 저온창고 및 창고 630m ²
13	대구 동구 L 조적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스테이지붕 2층 저온창고 및 창고 608.9m ²
14	대구 동구 L 철근콘크리트조 스테이지붕 단층 창고 및 사무실 168.7m ²

1	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
15	대구 동구 L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및 사무실 등 97m ²
16	대구 동구 L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4.3m ²
17	대구 동구 L 목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6m ²
18	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
이상 건물	
감정평가액 합계	
4,421,359,900원	

(2) 소극재산

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의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(이하 아래 채무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'순번 ○ 채무'라고 한다).

1	원고 A	108,000,000
2	원고 B	445,616,438
3	M 주식회사	25,688,870
4	N 주식회사3) 이하 'N'라고 한다.	22,547,609
5	O 조합	1,755,000,000
6	P	300,000,000
7	Q	150,000,000
8	R	500,000,000
합계	3,306,852,917	

이에 대하여, 피고는 ① 순번 4, 7 채무와 관련하여 위 각 채무를 담보하는 N 명의의 가압류 등기와 Q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선순위 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었고, ② 순번 6 채무와 관련하여 위 채무를 담보하는 P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20. 9. 14. 말소되었으므로, 위 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,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선순위 가등기의 본등기로

인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,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순번 4, 7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음으로,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,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P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P 명의의 채권이 존재하였던 이상 위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성을 판단함에 있어 산입되어야 할 소극재산에 해당하므로,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
(3) 소결론

결국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의 적극재산(4,421,359,900원)이 소극재산(3,306,852,917원)을 상회하고,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D의 채무가 승계되면 D의 적극재산은 1,160,424,300원(=4,421,359,900원 -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합계 3,260,935,600원)이고, 소극재산은 553,616,438원(=3,306,852,917원 - 피고가 인수한 D의 채무 합계 2,739,547,609원)이 되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D가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,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며,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, D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나.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판단

한편,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D와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나, 원고들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5, 8, 12, 13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성경희

판사정소영

판사민경준

별지

- 1) 2017. 4. 21.부터 2020. 7. 24.까지의 이자 발생일수는 1,191일이지만,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1190일로 계산한다.
- 2) 원고 B과 D 사이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(2017. 11. 7.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에서 정한 연 25%이지만, 원고 B은 이자율을 연 24%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, 이에 따라 판단한다.
- 3) 이하 'N'라고 한다.